탄 원 서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별 무죄 판단을 요청하는 시민 탄원서

사건번호	2026고합586 (공개 보도 기준)
수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형사부 귀중
피고인	서민석	당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부부장검사
탄원취지	공소사실의 개별 구성요건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은 경우 무죄 선고 요청

존경하는 재판장님과 재판부 법관님께.

저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수사와 그 후 이어진 형사재판을 지켜보는 시민으로서 서민석 피고인에 대한 탄원서를 올립니다. 먼저 수사기관이 작성하는 공식 문서는 정확해야 하고, 수사 결과를 설명하는 과정에 허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원칙은 공직자에게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수사 결과에 관한 사회적 논란이 곧바로 그 수사에 참여한 개개인의 범죄 성립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이 두 원칙을 함께 지켜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저는 공소장과 증거기록 전체를 열람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공개된 보도를 토대로 알려진 혐의와 확인된 형사법 원칙을 말씀드릴 뿐, 문서가 언제 작성되었는지 또는 피고인이 어떤 지시를 했는지를 직접 확인한 사실처럼 적지 않겠습니다. 이 점을 전제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독립적이고 엄격한 심리를 부탁드립니다.

1. 무엇이 문제 된 문서인지부터 분명하게 특정해 주십시오

2026년 8월 20일 특검의 기소에 관한 보도에 따르면, 서민석 피고인은 종합수사결과보고서의 작성일자 기재 및 그 행사와 관련한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언론에 등장하는 여러 검사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를 서민석 피고인에게 그대로 옮겨서는 안 됩니다. 그에게 적용되는 공소사실의 범위는 공소장 원문과 각 공소사실에 대응하는 증거로 확정되어야 합니다.

특히 보고서가 한 번에 작성되어 끝난 문서인지, 초안 작성·검토·보완·결재·전산등록이라는 여러 단계를 거친 문서인지가 중요합니다. 문서 제목이 같더라도 판본이 다르면 그 내용과 법적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재판부께서 문제 된 판본의 작성자와 수정자, 결재자, 사용 경위를 각각 분리하여 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2. 작성일자의 허위 여부는 날짜의 ‘의미’와 실제 경과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형법 제227조의 허위공문서작성죄는 공문서에 표시된 중요한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지 않고, 작성자가 그 허위성을 인식한 경우를 문제 삼습니다. 작성일자가 실제와 다르게 기재되었다면 공문서의 공신력을 해칠 수 있으므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다만 문서의 상단에 기재된 날짜가 최초 기안일을 뜻하는지, 기존 수사결과의 정리기준일을 뜻하는지, 최종 완성·결재 시점을 뜻하는지에 따라 그 표시가 전달하는 사실관계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문서의 양식, 내부 작성규정, 다른 수사기록과의 연결을 통해 그 의미를 먼저 특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판단은 처분일과 파일의 최초 생성일, 핵심 내용이 기재된 시점, 이후 수정 시점과 변경 범위, 결재 및 등록 시점, 외부 또는 내부에서 사용된 때를 나란히 놓고 살펴야 가능합니다. 문서에 사후 수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수정이 허위 작성인 것은 아니지만, 처분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실질적 수사근거를 과거에 이미 완성된 것처럼 표시했다면 그 사정은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느 한 가능성을 사실로 확정하기보다, 수정 전·후 문서의 핵심 문장과 그 작성 경위를 증거로 대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 피고인에게 허위에 대한 인식과 관여가 있었는지를 독립적으로 판단해 주십시오

같은 수사팀에 있었다는 사정, 검토나 결재 체계에 참여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구성원이 같은 인식을 지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서민석 피고인이 보고서의 어느 부분에 관여했는지, 문제가 된 작성일자나 내용의 변경을 어느 시점에 알았는지, 허위라고 인식하면서도 수정·유지·사용에 동의하거나 이를 실행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피고인의 지위가 아니라 피고인의 실제 의사와 행위를 살펴야 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공동으로 역할을 나누었다는 직접·간접 증거가 충분하고 피고인이 문서의 허위성을 알고 실질적으로 가담했다면, 문서를 직접 입력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당연히 배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 가능성까지 포함하여 공모의 존재, 의사연락의 경위, 실행분담의 내용, 개별 고의의 성립 여부를 각각 밝혀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증명의 빈 자리를 다른 피고인의 직위나 행동에 대한 추측으로 채워서는 안 됩니다.

4. 문서를 작성한 행위와 행사한 행위도 따로 심리해 주십시오

형법 제229조의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는 작성된 문서가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되는 행위를 별도로 문제 삼습니다. 따라서 문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문서가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에서 누구에게 제시되거나 이용되었는지, 서민석 피고인이 그 이용을 실행·공모하거나 그에 관한 고의를 가졌는지까지 살펴야 합니다. 내부 보고나 심사 과정에서 이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핵심은 문서가 실제 어느 용도에 사용되었는지, 그 사용의 주체와 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피고인의 관여가 작성 단계에 그쳤는지 행사 단계에까지 미쳤는지 구별하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행위에 관하여 구체적 증거 없이 하나의 책임으로 묶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5. 검사 측의 불리한 논거와 피고인 측의 설명을 같은 기준으로 검증해 주십시오

특검의 주장대로 불기소 처분 뒤 작성된 보고서가 과거에 존재했던 것처럼 표시되고, 그 표시가 이후 심사에서 진실한 자료로 이용되었다면 이는 공적 기록에 대한 신뢰를 해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대법원 2023년 선고 2022도6886 판결 역시, 실제로 하지 않은 조사를 한 것처럼 기재한 수사 결과서의 허위성을 엄격하게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판례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면책 판례로 제시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개 보도에 나타난 피고인 측의 설명처럼 이미 핵심 내용이 작성되어 있었고 뒤의 변경이 문서의 표현이나 완성도를 보완한 것이었다면, 무엇이 언제부터 존재했는지에 대한 증거를 정밀하게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9도18394 판결이 구분한 법적 판단의 잘못과 문서 자체의 사실상 허위도 이 점을 살펴보는 참고 법리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판결만으로 작성일자를 달리 표시한 행위가 정당화된다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2026년 9월 29일 공판준비기일에 증거목록과 기록의 일치 여부가 문제 되었고, 재판부가 특검에 목록과 입증 취지의 정리를 요구했다는 공개 보도도 있습니다. 이것은 방어권 행사와 증거 특정의 중요성을 보여 주지만, 그 자체로 핵심 증거

가 허위이거나 위법하게 수집되었다고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각 증거가 어느 공소사실을 입증하는지 분명하게정리된 상태에서 공정한 심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6. 무죄추정의 원칙과 개별 책임의 기준을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건의 사회적 파장이 크고 수사기관의 책임이 무겁다는 사실을 이유로 형사법의 증명 기준까지 낮출 수는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에 따라 범죄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서민석 피고인에 대해 판단할 때에는 보고서의 객관적 허위성, 허위에 대한 인식, 행사 목적, 실제 작성 관여 및 행사행위가 각기 충분히 증명되었는지 구별하여 주십시오. 저는 조사와 재판에서 불리한 사실을 덮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유죄의 모든 요건을 엄격하게 증명한 뒤에만 형벌을 부과해 달라는 시민의 원칙적인 바람을 전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드리는 말씀

이 탄원은 누구에게도 특혜를 달라는 요청이 아닙니다. 기록에 나타난 사실이 불리하다면 그 사실 역시 외면하지 않되, 공직에 있었다는 이유,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았다는 이유, 함께 수사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의 고의와 행위까지 한꺼번에 인정하지 말아 달라는 부탁입니다. 형사재판은 의혹의 크기가 아니라 증거의 힘으로 결론을 내리는 절차라고 믿습니다. 재판부께서 각 공소사실과 피고인 개인의 행위를 세심하게 가려 주시고, 검사의 증명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준에 이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탄원합니다.

탄원인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

주소: _____

연락처: _____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형사부 귀중